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장비 변경등록(감선)으로 인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공고 기간 : 2023. 12. 14. ~ 12. 29.

3.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홍양해운	이*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기준(통선)은 총톤수 20톤이상(부산항)이나, 2023. 11. 27. 항만용역업 등록장비 변경등록(감선)으로 인해 현재 등록된 장비로는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기준에 미달함	사업 정지 1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5.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29.(금)까지

6.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

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항만물류과, ☎051)609-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